

소방관계 법규

1 기간

* 1일

- (1)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2일

-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의 등록수첩 발급
- (2)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시의 등록수첩 발급

* 3일

- (1) 하자보수기간
-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 4일

-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 5일

- (1) 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 7일

- (1) 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간
- (2)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 (3)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 (4)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보고일
- (5) 소방특별조사 서면통지일

* 10일

- (1) 과태료부과의 의견진술 기회
- (2)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교육 통보일
- (3)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4)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5) 소방안전교육 통보일
- (6)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통보일
- (7) 소방시설업 등록증 지위승계시의 재발급
- (8)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 (9) 소방기술사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일
- (10)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일
- (11)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서류 보완일
- (12)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공검사필증 제출일

* 14일

- (1) 방치된 위험물 공고기간
- (2)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휴폐업신고일
- (3)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일
- (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 (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 15일

- (1)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신청서류 보완일
-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발급

* 20일

- (1)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실시 공고일

* 30일

- (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4)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
- (5) 도급계약 해지
- (6)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일
- (7)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8)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서류제출
- (9) 승계
- (10)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11)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일

* 90일

-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
- (2) 위험물 임시저장기간
- (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공고일

2 횟수

* 월 1회 이상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연 1회 이상

-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훈련·교육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 (3)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4) 종합정밀점검
- (5) 작동기능점검

* 2년마다 1회 이상

- (1)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 (2) 실무교육

③ 담당자

* 국민안전처장관

- (1)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방염성능 검사
- (3)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
- (4)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정관변경
- (5)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감독
-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정하는 것
- (7)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8) 우수품질제품 인증
- (9) 소방특별조사의 계획수립
- (10)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 (11)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1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필요사항 제정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2)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 소방대장

- (1)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 (1) 소방활동 종사명령
- (2) 강제처분
- (3)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기본법12조)

- (1) 화재의 예방조치
- (2) 방치된 위험물보관
- (3)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 (4) 화재위험경보발령
- (5) 의용소방대의 설치
- (6)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7)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소방훈련·교육
- (8) 건축허가 등의 동의
- (9)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 (10)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 (1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보고
- (12) 소방계획의 작성·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 (13) 소방안전교육 실시
- (1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완공검사
- (15)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16)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

*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1) 소방시설업의 감독
- (2) 제조소 등의 출입검사
-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
- (5) 과태료부과
- (6) 제조소 등의 수리·개조·이전명령

* 시·도지사

-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2)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 (3)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 (4)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 및 소방업무 수행
-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6) 제조소 등의 승계
- (7) 소방력의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 (8)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10) 탱크시험자의 등록
- (11)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 (12) 탱크 안전성능 검사
- (1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14) 제조소 드요이 용도폐지
- (15) 예방규정의 제출

*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1)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2) 소방활동
- (3)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 (4)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 (6)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7)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위탁교육

④ 관련법령

* 대통령령

- (1)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사항 정하는 기준
- (3)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4) 방염성능 기준
- (5)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정관 규정
- (6)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9)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 (10) 위험물의 정의
- (11)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 (12)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 총리령

-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소방박물관
- (3) 소방력 기준
-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5)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
-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규정
- (7)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8) 화재조사규정
- (9) 국고보조산정 기준가격
- (10)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방법
- (11) 우수품질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
- (12)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13)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 (14) 실무교육기관 지정방법·절차·기준
- (15)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시·도의 조례

- (1) 소방체험관
- (2) 의용소방대의 설치
- (3)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

㉔ 인가·승인 등

* 인가

-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정관 변경

* 승인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등록

- (1) 소방시설 관리업
- (2) 소방시설업
- (3)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신고

-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2)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3) 제조소 등의 승계
- (4)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 허가

- : 제조소 등의 설치

㉕ 벌칙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험물을 유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험물을 유출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험물을 유출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시킨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2) 사람구출 방해
- (3) 소방용수시설의 호용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 (3) 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 (4)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5)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 (2) 소방대상물·토지의 강제처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 (2)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대여
- (4) 무허가 제조소 설치자
- (5)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거짓 작성
- (6)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7)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자
- (8)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위반자
- (9)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 (10)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 (11) 거짓 감리자
- (12)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 (13) 하도급자
- (14)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 도급
- (1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2) 제조소 등의 무단 변경
- (3)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 위반
- (4)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관계인
- (5) 대리자를 미지정한 관계인
- (6)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 명령 위반
- (7)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 명령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관계인의 소방특별조사 방해
- (2)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및 비밀누설
-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서류제출
- (4)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5)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 (6)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 (7)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 (8)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9) 감리원 미배치자
- (10)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 (11)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12) 관계인의 업무방해
- (1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 (14)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15) 위험물 운송기준 위반
- (16) 관계인의 출입·검사 방해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 (2) 관계인이 관계공무원의 화재조사 방해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기피
- (2) 피난 명령 위반
- (3)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 (4) 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소방활동 미수행)
- (5) 거짓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 (6)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방해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설치명령 위반
- (2)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 (3) 화재·구조·구급 거짓신고
- (4) 소방활동구역 출입
- (5)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 (6) 관계인의 거짓 자료제출
- (7)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 (8)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 (9) 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10) 관계서류 미보관자
- (11)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 (12) 하도급 미통지자
- (13)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14)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 (15)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16)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거짓신고
- (17)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19) 제조소 등의 폐지 거짓신고

* 과태료 20만원 이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1. 소방기본법

* 기본법1조 - 소방기본법의 목적

- (1)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2)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
- (3)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 (4) 구조 · 구급활동

* 기본법2조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기본법2조 -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기본법2조 - 위험물

- (1)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 시·도의 조례
- (2)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 90일 이내

* 기본법2조1호 - 소방대상물

- (1) 건축물
- (2) 차량
- (3) 선박(메어둔 것)
- (4) 선박건조 구조물
- (5) 인공구조물
- (6) 물건
- (7) 산림

* 기본법2조5항 - 소방대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 (1) 소방공무원
- (2) 의무소방원
- (3) 의용소방대원

* 기본법5조 - 설립과 운영

종 류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1항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2항	총리령	시·도의 조례

* 기본법7조 -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본법8,9조 - 소방력 기준

-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
- (2) 시·도지사 : 관할구역 내의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4) 소방력 기준 : 총리령
- (5)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대통령령

* 기본법8조2항

: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법10조 - 소방용수시설

- (1)종류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2)기준 : 총리령
- (3)설치·유지·관리 : 시·도지사
(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

* 기본법12조 -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때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 기본법12조 -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기본법17조2 - 소방안전교육사의 수행업무

- (1)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 (2)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 (3)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 (4)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 (5) 소방안전교육의 교수업무

* 기본법19조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신고지역
- (1) 시장지역
-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기본법20조 - 관계인의 소방활동

- (1) 불을 끄
- (2)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
- (3) 사람구출(경보를 울리는 방법)
- (4) 사람구출(대피유도 방법)

* 기본법23조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1) 설정권자 : 소방대장
- (2) 설정구역 : - 화재현장,
-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 기본법29~32조 - 기본규칙11조

-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시 어떠한 경우라도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화재조사를 할 수 있다
- (3) 화재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 (4)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조사와 재산피해조사로 구분한다

* 기본법41조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5)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2. 소방기본법 시행령

* 기본령2조 -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 (1) 국고보조의 대상
 - ①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전산설비
 - 방화복
 - ② 소방관서용 청사
- (2) 국고보조산정 기준가격 : 총리령
- (3)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에 따름 (대통령령)

* 기본령3조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보관자	보관기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 기본령4조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 지정권자 : 시·도지사
 - (2) 지정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기본령7조 -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기준

- (1) 품명별로 저장·취급기준
- (2)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석탄·목탄류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취급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설치

* 기본령7조2 -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 (1)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 (2)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3) 교원(정교사)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졸업자
 - ① 소방안전관련학과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 한 자
 -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기본령(별표1) - 보일러 등의 위치·주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구 분	기 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기본령(별표1) -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기본령(별표1)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1) 주방설비에 부착된 배기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
-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
-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울 것

* 기본령(별표2) -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 :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

품 명		수 량
가연성 액체류		2m ³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m ³ 이상
면화류		2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사류		
벼짚류		
가연성 고체류		3000kg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m ³ 이상
	그 밖의 것	3000kg 이상
석탄·목탄류		10000kg 이상

* 기본령(별표2의2)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소방서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협회	·시·도지부 : 1명 이상 ·본회 : 2명 이상
소방본부	·2명 이상
국민안전처	·2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 기본령(별표3)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 기본규칙3조 - 종합상황실장의 기록·관리사항

- (1)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 기본규칙7조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1) 조사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2) 조사일시 : 월 1회 이상
- (3) 조사내용
 - ① 소방용수시설
 - ② 도로의 폭·교통상황
 - ③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저
 - ④ 건축물의 개황
- (4)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 기본규칙8조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1) 다음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①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 ②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 ③ 화재조사활동
-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 (3)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기본규칙10조 -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신호	설 명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기본규칙12조 -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업무

-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 (2) 화재조사의 실시
-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사항
-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 (5)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기본규칙(별표3) -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의 설치기준

구 분	기 준
낙차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60cm 이상

-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2)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3)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기본규칙(별표3) -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구 분	소화전	급수탑
구 경	65mm	100mm
개폐밸브 높이	-	지상1.5~1.7m 이하

* 기본규칙(별표3)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거리기준	지역
100m 이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140m 이하	·기타지역

* 기본규칙(별표4) - 소방신호표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법률

*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 (1) 역전
- (2) 종합병원
- (3) 역·터미널

* 설치유지법2조1항 - 소방시설

- (1) 소화설비
- (2) 소화용수설비
- (3) 소화활동설비
- (4) 경보설비
- (5) 피난설비

* 설치유지법5조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1) 명령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2) 명령사항
 - ①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 ② 이전명령
 - ③ 제거명령
 - ④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 ⑤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 설치유지법6조 - 손실보상

- (1) 국민안전처장관
- (2) 시·도지사

* 설치유지법7조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설치유지법20조6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
- (3) 소방훈련 및 교육 -
- (4)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설치유지법21조 - 공동소방안전관리

-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 (2) 지하가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유지법27조 -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자격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설치유지법29조 - 소방시설관리업

- (1) 업무 - 소방시설 등의 점검
- 소방시설 등의 유지
- 소방시설 등의 관리
- (2) 등록권자 : 시·도지사
- (3) 등록기준 : 대통령령

* 설치유지법38조 -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1) 제품검사의 중지사항
 - ① 시험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②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③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진열·공사에 사용시
- (2) 형식승인 취소사항
 - ①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③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설치유지법44조 - 청문실시 대상

- (1) 소방시설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2)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 (4)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5)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령

* 설치유지령2조 - 무창층의 개구부의 기준

- (1)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3)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 터를 향 할 것
- (4)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설치유지령2조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설치유지령6조 - 소방용품 제외 대상

- (1)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2) 가스 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3) 분말 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4)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5)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6) 휴대용 비상조명등
- (7) 유도표지
- (8) 벨용 푸시버튼스위치
- (9) 피난बाट줄
- (10) 옥내소화전함
- (11) 방수구
- (12) 안전매트
- (13) 방수복
- (14) 음량조절장치

* 설치유지령7조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설치유지령11조

- (1) 손실보상권자 : 시·도지사
- (2) 손실보상방법 : 시가 보상

* 설치유지령12조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 (1) 연면적 400㎡(학교시설:100㎡, 수련시설·노유자시설:200㎡,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300㎡) 이상
- (2) 차고·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200㎡ 이상(자동차 20대 이상)
- (3)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은 100㎡ 이상)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6) 결핵환자나 Hansen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7) 지하구

* 설치유지령13조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설치유지령15조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1) 옥내소화전설비
- (2) 스프링클러설비
- (3) 물분무등소화설비

* 설치유지령19조 - 방염성능기준 이상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 (1) 11층 이상의 층 (아파트제외)
- (2) 체력단련장
- (3)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4) 숙박시설·노유자시설
- (5)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6)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7) 방송국·촬영소
- (8)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9) 종교시설
- (10) 합숙소

* 설치유지령20조1항 - 방염대상물품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② 카펫
 - ③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④ 전시용 합판 · 섬유판
 - ⑤ 무대용 합판 · 섬유판
 - ⑥ 암막 · 무대막(영화상영관·골프연습장의 스크린 포함)
 - ⑦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 벽에 부착 · 설치하는 것
 - ①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② 합판이나 목재
 -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④ 흡음·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 가구류(우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내부마감재료 제외

* 설치유지령22조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아파트, 동·식물원, 불연성물품 저장·취급창고, 지하구,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제조소 등, 동·식물원 제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것
 -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000t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100~1000t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스프링클러설비·가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공동주택
 - 목조건축물(국보·보물)

* 설치유지령23조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경 력	비 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소방설비기사)	2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5년	
·소방공무원	20년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
·특급 소방안전관리 강습 교육수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경 력	비 고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2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경력자
·대학(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대학(소방안전관련학과)	3년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5년	
·소방공무원	7년	-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전기안전관리자	-	-

-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선임조건

자 격	경 력	비 고
·군부대·의무소방대원	1년	-
·화재진압·보조업무	1년	-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2년	-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3년	-
·의용소방대원·자체소방대원	3년	-
·대학(소방안전관리학과)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대학(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소방안전과목 6학점이상 이수	-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	-
·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	-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능장	-	-
·산업안전기사	-	-
·건축기사	-	-

* 설치유지령25조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 (2) 지하가
 -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 (4)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 (5) 도매시장, 소매시장
 - (6)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설치유지령27조 -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 (1) 2년 이상 - 소방설비기사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 (2) 3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대학(소방안전관련학과)
- (3) 5년 이상 - 소방공무원
- (4) 10년 이상 - 소방실무경력
- (5) 소방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6)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설치유지령30조 -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2)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4) 소방시설관리사
- (5) 소방기술사

* 설치유지령(별표1) - 경보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1)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 사이렌설비
-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3) 비상방송설비
- (4) 누전경보기
-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6) 자동화재속보설비
- (7) 가스누설경보기
- (8) 통합감시시설

* 설치유지령(별표1) - 피난설비

- (1) 피난설비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피난교, 공기안전 매트, 승각식피난기, 다수인 피난장비)
-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설치유지령(별표1)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1) 연결송수관설비
- (2) 연결살수설비
- (3) 연소방지설비
- (4) 무선통신보조설비
- (5) 제연설비
- (6) 비상콘센트설비

* 설치유지령(별표2) - 업무시설

- (1) 동사무소 · 경찰서 · 소방서
- (2) 우체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3) 국민건강보험공단
- (4) 금융업소 · 오피스텔 · 신문사
- (5)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 설치유지령(별표2) - 지하구

구 분	설 명	비 고
폭	1.8m 이상	-
높이	2m 이상	-
길이	50m 이상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은 500m 이상

* 설치유지령(별표2) - 근린생활시설

면 적	적용장소
150㎡ 미만	·단란주점
300㎡ 미만	·종교시설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500㎡ 미만	·탁구장 ·서점 ·볼링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학원 ·골프연습장
1000㎡ 미만	·자동차영업소 ·슈퍼마켓 ·일용품
전부	·기원·의원·이용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독서실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조산원(산후조리원 포함)

* 설치유지령(별표2) - 의료시설

구 분	종 류
병원	·종합병원 ·병언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설치유지령(별표2) - 노유자시설

구 분	종 류
노인관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관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관련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설치유지령(별표3)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소화기
- (2) 자동소화장치
- (3)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 (4) 소화전
- (5) 송수구
- (6) 관창
- (7) 소방호스
- (8) 스프링클러헤드
- (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10) 유수제어밸브
- (11) 가스관 선택밸브

* 설치유지령(별표3) -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1) 소화약제
- (2) 방염제(방염액 · 방염도료 · 방염성 물질)

* 설치유지령(별표3)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특정소방대상물		산정방법
·숙박시설	침대가있는경우	종사자수+침대수
	침대가없는경우	종사자수+바닥면적합계 / 3㎡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교무실 ·실습실	바닥면적합계 / 1.9㎡
·기타		바닥면적합계 / 3㎡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의합계 / 4.6㎡

* 설치유지령(별표5)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 및 창고시설 ·업무시설 ·국방 · 군사시설 ·발전시설(무인경비 시스템)	·바닥면적 1500㎡ 이상
·목조건축물	·국보 · 보물
·노유자 생활시설 ·30층 이상	·전부

* 설치유지령(별표5)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조 건
·노유자시설	·연면적 400㎡ 이상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숙박시설·의료시설 ·복합건축물·장례식장	·연면적 600㎡ 이상
·목욕장·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방송통신시설·관광휴게시설 ·업무시설·판매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공장· 창고시설 ·지하가·공동주택·운수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동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수련시설(숙박시설 있는 것 제외)	·연면적 2000㎡ 이상
·터널	·길이 1000m 이상
·전부	·지하구 ·노유자생활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500배 이상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숙박시설 있는 것)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설치유지령(별표5)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수용인원 -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지하층·무창층 500㎡ (기타 1000㎡) 이상 ·무대부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300㎡ 이상 - 1~3층 500㎡ 이상
·판매시설	·수용인원 - 500명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것)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지하가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 무창층 · 4층이상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10m 넘는 랙크식 창고	·연면적 합계 1500㎡ 이상
·복합건축물 ·기숙사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 전층
·11층 이상	·전 층
·보일러실 · 연결통로	·전부
·특수가연물 저장 · 취급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설치유지령(별표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노유자시설 · 정신의료기관	·창살설치 : 300㎡ 미만 ·기타 : 300~600㎡ 미만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은 전층

* 설치유지령(별표5) -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학교 700㎡)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가스시설	·30t 이상 탱크시설
·전부	·연결통로

* 설치유지령(별표5)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연면적	설치대상
600㎡ 미만	·숙박시설
1000㎡ 미만	·기숙사 ·아파트
2000㎡ 미만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의 합숙소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의 기숙사
모두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설치유지령(별표5)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차고 ·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 이상
·기계식 주차장	·20대 이상
·항공기격납고	·전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750배 이상

* 설치유지령(별표5) -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전부	·연면적 4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	·길이 500m 이상
옥내작업장	·50명 이상 작업

* 설치유지령(별표5) -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방연 및 제연함은 물론 화재의 확대연기의 확산을 막아 연기로 인한 탈출로 차단 및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피난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대상	조 건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② 종교시설	·바닥면적 200㎡ 이상
③ 기타	·1000㎡ 이상
④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⑤ 지하가 중 터널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이령으로 정하는 것
⑥ 특별피난계단 ⑦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

* 설치유지령(별표5) -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종 류	설치대상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 이상 ·지정문화재- 면적, 길이에 ·가스시설 - 관계없이 설치 ·터널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전층)

* 설치유지령(별표5) -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 (1) 연면적 3500㎡ 이상
- (2)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3) 지하 3층 이상

* 설치유지령(별표5) -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

- (1) 유흥주점영업시설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만 해당)
-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 (3) 운동시설
- (4) 종교시설

* 설치유지령(별표6) - 소방시설 면제기준

면제대상	대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동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	·공기조화설비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설치유지령(별표7) - 방염업

종 류	설 명
섬유류 방염업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설치유지령(별표7)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구 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 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4)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유지령(별표8) -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 (1) 제조설비
- (2) 가공설비
- (3) 성형설비

* 설치유지령(별표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 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

* 설치유지규칙4조 - 건축허가 동의시 첨부서류

- (1)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 (2) 설계도서 및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3)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 (4)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사본
- (5)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 (6) 소방시설의 층별 단면도 및 층별 계통도
- (7) 창호도

※ 창호도 : 출입구·창·문 등의 여러형식·치수·재질·마감·유리의 종류와, 크기·철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나타내는 도면

※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설치유지규칙7조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1) 1층 : 타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 (2) 2층 : 타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하
- (3)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4)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 설치유지규칙19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년	30일 이내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

※ 2년간 보관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조사결과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 자체점검시의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 설치유지규칙(별표1)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 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뜻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 (연면적 5000㎡ 이상) 설치대상물 ·아파트(연면적 5000㎡ 이상, 11층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점검자 자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횟수	연 1회이상	연1회(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설치유지규칙(별표8) -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위반사항
1차 영업정지 6개월	·거짓보고 또는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방해한 경우
1차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등록증 대여

7.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설계, 감리업 등)

- (1) 등록사항의 변경 : 시·도지사
- (2) 감리결과보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3) 소방감리업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보
- (4)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공법 등에서 특수한 설계인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공사업법2조 - 소방시설업의 종류

종 류	특 징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영업
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 하는 영업
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
방염처리업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 공사업법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시·도지사에게 신고

* 공사업법13조~15조 - 착공신고 · 완공검사 등

- (1)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2)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3) 하자보수기간 : 3일 이내

* 공사업법15조

-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는 경우

- (1)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규정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사업법23조 - 도급계약의 해지

-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하수습인의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업법33조 - 권한의 위탁

업 무	위 탁	권 한
·실무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기관	국민안전처장관
·시공능력평가	·소방시설업자협회	

·공시업무 ·소방기술의 자격·학력·경력		
-----------------------------	--	--

* 공사업법34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

- (1)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려는 자
-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4)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5)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8. 소방시설 공사업 시행령

* 공사업령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 (2)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 (3) 판매시설
- (4) 숙박시설
- (5) 창고시설
- (6) 지하상가
- (7) 다중이용업소
- (8) 가스계 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 제외)
- (9)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 (10)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저장시설

* 공사업령6조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	소방시설
2년	· 유도등 · 유도표지 · 피난기구 ·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옥내 · 외 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 공사업령(별표1) - 소방시설 공사업

종 류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전 문	·주된기술인력: 1명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이상	·법인: 1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	·특정소방 대상물
일 반	·주된기술인력: 1명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1억원이상	·연 면 적 1만㎡미만 ·위험물 제조소 등

* 공사업령(별표1) - 소방시설 설계업

종 류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 문	·주된기술인력: 1명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 반	·주된기술인력: 1명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아파트 ·연면적3만㎡ (공장 1만㎡) 미만 ·위험물 제조소 등

- * 공사업령(별표1) - 소방시설업의 보조기술인력 등록기준
-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감리업
-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 공사업령(별표9) -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 등록기준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 공사업령(별표3) - 상주공사감리 대상
- (1)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2) 16층 이상(지상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공사업령(별표4)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공사현장	배치기준
·연면적 5천㎡ 미만 ·지하구	·초급 이상 1명 이상
·연면적 5천~3만㎡ 미만 ·16층 미만(지하층 포함)	·중급 이상 1명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제연설비 설치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고급 이상 1명 이상
·연면적 3만~20만㎡ 미만 ·16~40층 미만(지하층 포함)	·특급 이상 1명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40층 이상(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소방기술사 1명 이상)

9. 소방시설 공사업 시행규칙

- * 공사업규칙5조 -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2) 상호 또는 명칭 변경
 - (3) 기술인력 변경
 - (4) 대표자 변경

- * 공사업규칙6조1항 - 소방시설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1) 소방시설업 등록증
 - (2)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 * 공사업규칙12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1) 설계도서
 - (2)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 (4)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 (5)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

- * 공사업규칙16조 - 상주공사감리
-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 * 공사업규칙19조 - 소방공사감리결과 통보·보고
- (1) 통보대상 - 관계인
 - 도급인
 - 건축사
 - (2)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3) 통보·보고일 : 7일 이내

- * 위험물규칙(별표14) -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 (1) 바닥면적은 6~15㎡ 이하 일 것
 - (2)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0. 위험물 안전관리법

* 제4류 위험물의 적응소화설비

- (1) 물분무 소화설비
- (2) 미분무 소화설비
- (3) 포소화설비
- (4)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7) 분말소화설비
- (8) 강화액 소화설비

* 위험물별 적응소화약제

위험물	적응소화약제
제1류 위험물	·물소화약제(단, 무기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제2류 위험물	·물소화약제(단, 금속분은 마른모래)
제3류 위험물	·마른모래
제4류 위험물	·포소화약제 ·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 ·제1~4종 분말소화약제 ·CO2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제5류 위험물	·물소화약제
제6류 위험물	·마른모래(단, 과산화수소는 물 소화약제)
특수가연물	·제3종 분말소화약제 ·포소화약제

* 위험물법6조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1) 설치허가자 : 시·도지사
- (2) 설치허가 제외장소
 - ① 주택의 난방시설
 - ②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 (3)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
 - (1) 특별시장
 - (2) 광역시장
 - (3) 특별자치시장
 - (4) 도지사
 - (5) 특별자치도지사

* 위험물법15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

: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 위험물법17조 - 예방규정

- (1) 제출자 : 시·도지사
- (2) 제출시기 :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시작 전까지

* 위험물법34조 - 위험물 유출·방출·확산

위험발생	사람사상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 위험물령8조 -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검사항목	조 건
·기조·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L 이상인 탱크
·층수·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위험물령15조 -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예방규정 -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규정

배 수	제조소 등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령16조 - 정기점검대상인 제조소 등

-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7) 지하탱크저장소
- (8) 이동탱크저장소
- (9)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위험물령18조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 지정수량의 3000배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

자체소방대	자위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방대	빌딩·공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소방대

* 위험물령19조 -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는 위험물

- (1) 알킬알루미늄
- (2) 알킬리튬

* 위험물령(별표1) - 위험물

유 별	성 질	품 명
제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아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질산칼륨) ·무기과산화물(과산화바륨)
제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황린 ·칼륨 ·나트륨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셀룰로이드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위험물령(별표1) - 제1류 위험물

성질	품명	지정수량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50kg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산화성고체	브롬산염류	300kg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산화성고체	중크롬산염류	1000kg

* 위험물령(별표1) - 제4류 위험물

구 분	종 류	인화점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20℃ 이하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콜로디온	21℃ 이하
제2석유류	·등유 ·경유	21~70℃ 이하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70~200℃ 이하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200~250℃ 이하

성질	품 명	지정수량	대표물질	
인 화 성 액 체	특수인화물	50L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휘발유 ·콜로디온
		수용성	400L	·아세톤
	알코올류	400L	·변경알코올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등유 ·경유
		수용성	2000L	·아세트산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중유 ·클레오소트유
		수용성	4000L	·클리세린
	제4석유류	6000L	·기어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10000L	·아마인유	

* 위험물령(별표3) -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

구 분	설 명
주유 취급소	고정된 주입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 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이송 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일반 취급소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

* 위험물령(별표9)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규칙65조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기간

점검기간	조 건
·11년 이내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연장신청을 한 경우)

* 위험물규칙68조2항 - 정기점검기록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기 타
25년	3년

* 위험물규칙(별표4) - 채광설비

- (1) 불연재료로 할 것
- (2)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할 것

* 위험물규칙(별표4) -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 (1)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 (2)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일 것

* 위험물규칙(별표4) -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설치기준

위험물	주의사항	비 고
·제1류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위험물(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주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위험물 ·제5류위험물	화기엄금	
·제6류위험물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위험물규칙(별표4) -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안전거리	대 상
3m 이상	·7~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10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m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고압가스 사용시설(1일 30m³ 이상 용적 취급) ·고압가스 저장시설 ·액화산소 소비시설
	·액화석유가스 제조 · 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30m 이상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 - 300명 이상 수용시설
	·영화상영관 - "
	·아동복지시설 - 20명이상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50m 이상	·유형 문화재
	·지정 문화재
	·어린이집 -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 위험물규칙(별표4) - 환기설비

- (1)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 할 것
- (2) 환기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할 것
-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할 것

* 위험물규칙(별표4) -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

-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cm² 이상일 것
-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4)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² 미만	150cm² 이상
60~90m² 미만	300cm² 이상
90~120m² 미만	450cm² 이상
120~150m² 미만	600cm² 이상

* 위험물규칙(별표5)

(1)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내화구조	기타구조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2)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규칙(별표11))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1~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1~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1~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위험물규칙(별표6)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1) 높이 : 0.5~3m 이하
- (2) 탱크 : 10기(모든 탱크용량이 20만L 이하, 인화점이 70~200°C 미만은 20기) 이하
- (3) 면적 : 80000㎡ 이하
- (4) 용량 - 1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 2기 이상 : 최대용량의 110% 이상

* 위험물규칙(별표6) -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1~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1~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1~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1~4000배 이하	15m 이상

* 위험물규칙(별표14)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 위험물규칙(별표17) -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구 분	경보설비
·연면적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1종이상

* 위험물규칙(별표17) - 소화설비의 적응성

대상물	소화설비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마른모래 ·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제5류 위험물	·옥내 · 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통 · 수조 ·마른모래 ·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제6류 위험물	·옥내 · 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 ·물통 · 수조 ·마른모래 ·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 위험물규칙(별표19) - 위험물의 혼재기준

- (1) 제1류 + 제6류
- (2) 제2류 + 제4류
- (3) 제2류 + 제5류
- (4) 제3류 + 제4류
- (5) 제4류 + 제5류

* 위험물규칙(별표23) - 화학소방자동차의 방사능력

구 분	방사능력
·분말방사차	35kg/s 이상 (1400kg 이상비치)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40kg/s 이상 (3000kg 이상비치)
·포수용액 방사차	2000 l/min 이상 (10만l 이상비치)
·제독차	50kg 이상 비치